### 도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
# 심사보고서

2015. 12. 18. 사회건설위원회

#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1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

제7차 사회건설위원회(2015.12.9) 상정 의결

#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도시국장 김종호)

#### 가. 제안이유

○ 도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(안) 수립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」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#### 나. 정비계획안 개요

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52-76번지 일대

O 면 적: 70,519m²

○ 용도지역 : 2종일반주거지역, 2종일반주거지역(7층)

○ 주요내용

- 가로환경개선·방범안전강화사업 계획(도로포장, 보안등 및 CCTV 개선 등)

- 주민공동체 활성화 계획
-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관한 결정도 등
- 공람공고 : 공고일 : 2015.10.05.

(공고기간 : 2015.10.05. ~ 2015.11.03.)

#### 3. 집행부 의견

○ 도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(안)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임.

#### 4. 위원회 심사방법

○ 원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주택과장의 PT보고 및 보충 설명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·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함.

#### 5. 심사결과 : 의견없음

붙임: 도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 1부. 끝.

# 도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인

## □ 정비사업 개요

## ○ 정비구역 지정조서

| 구분 |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 치 면 적(㎡) |           |       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|
| ਾਦ | প্রদাশ র প্র           | Π ^1                    | 기정         | 변경        | 변경후    | 可工 |
| 신설 | 도림동 (장미마을)<br>주거환경관리사업 | 영등포구 도림동<br>152-76번지 일대 | _          | 증) 70,519 | 70,519 | -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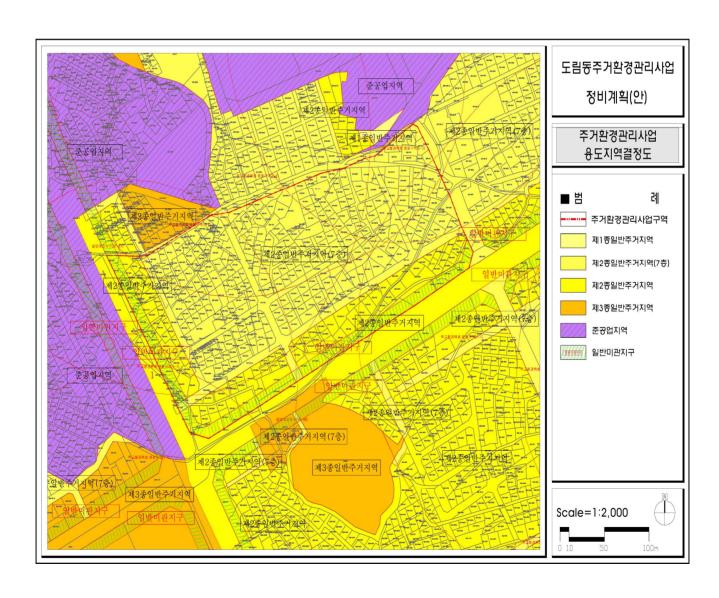
### ○ 토지이용 계획

| 구분           | 명 칭    |          | 면 적(m²) | 구성비(%    | 비고    |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|
| 一七           | 73 73  | 기정       | 변경      | 변경후      | )     | 川工  |
|              | 합 계    | 70,519.0 | -       | 70,519.0 | 100.0 | _   |
| 주택           | 소계     | 57,143.3 | ı       | 57,143.3 | 81.0  | -   |
| 용지           | 주택용지   | 57,143.3 | -       | 57,143.3 | 81.0  | _   |
| 정비           | 소계     | 8,574.7  | -       | 8,574.7  | 12.2  | _   |
| 기반<br>시설     | 도시계획도로 | 8,574.7  | -       | 8,574.7  | 12.2  | _   |
| <br>기반<br>시설 | 공공공지   | 188.0    | -       | 188.0    | 0.3   | 2개소 |
| 기타           | 현황도로   | 4,613.0  |         | 4,613.0  | 6.5   |     |



### ○ 용도지역·지구 결정조서 (변경없음)

| 구분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면적(11%) | 구성비(%)   | של יי    |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기정       | 변경      | 변경 후     | T'8"I(%) | 비고 |
|            | 계                   | 70,519.0 | -       | 70,519.0 | 100.0    |    |
| 일반<br>주거지역 | 제2종일반주거지역<br>(7층이하) | 49,905.2 | -       | 49,905.2 | 70.8     |    |
|            |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      | 20,613.8 | -       | 20,613.8 | 29.2     |    |



## ○ 공동이용시설 조성계획

(1) 공동이용시설 후보지

| 구 분         | 1순위        | 2순위        | 3순위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사 진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
| 위 치         | 도림동 140-15 | 도림동 138-33 | 도림동 138-41 |
| 대지면적(m²)    | 337        | 178        | 213        |
| 건축면적(m²)    | 90.25      | 73.77      | 80.0       |
| <br>연면적(m²) | 181.49     | 221.31     | 240.24     |
| 지 목         | 대 지        | 대 지        | 대 지        |
| 흥 수         | 지상2층/지하1층  | 지상2층/지하1층  | 지상3층/ -    |
| 용 도         | 단독주택       | 주택         | 근린생활시설, 주택 |
| 준공년도        | 1977       | 1984       | 1995       |

### (2) 공동이용시설 후보지 위치도



### (3) 공동이용시설 운영프로그램

| 구분     | 세 부<br>프로그램     | 시간          | 운영내용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
| 옥상텃밭   | 옥상텃밭            | 항시          | 옥상 텃밭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도록 도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마을안전센터 | 마을안전센터          | 항시          | 마을 방범 안전센터   |
| 주민공예실  | 공예교육<br>수공예품 제작 | 항시          | 창의적 활동 공간  |
|        | 반찬나눔            | 요리<br>수업 후  | 요리수업 후 잉여반찬을 1인 세대를 위해 나눔 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나눔부엌   | 무료급식            | 월 1~2회      | 60세 이상 1인 독거세대를 위해 무료급식을 월 1~2회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다문화<br>음식체험     | 분기별<br>2회이상 | 다문화 가정의 엄마가 본국의 음식을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정도 나누고 서로<br>더불어 살도록 진행 |
| 운영사무실  | 운영사무실           | 항시          | 전반적인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 |
| 지하강당   | 다목적실            | 신청접수        | 어린이 놀이공간, 성인 모임장소(주민회의)<br>기타 물리적 공간 제공             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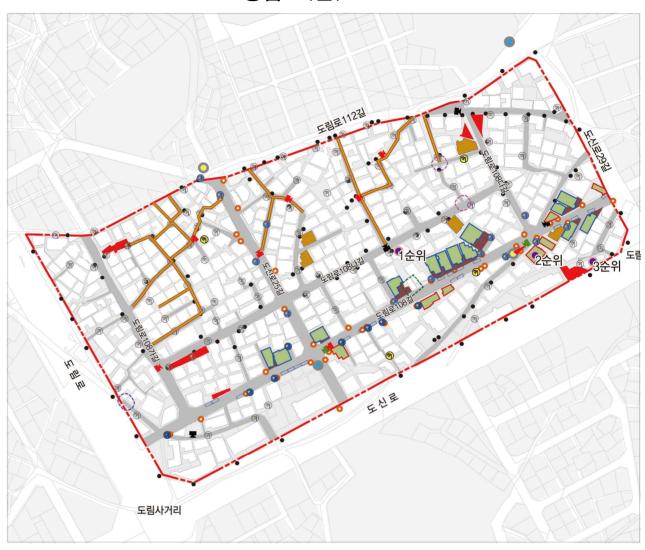
<sup>※</sup> 참고: 주민공동시설 운영 프로그램은 주민공동체 운영회가 조직되기 전 계획이므로 구체적 내용은 조정될수 있음.

### ○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

| 구분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위치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 巨斗し       | 공동이용시설 조성               | 마을 공동체 거점              | 후보지(3개소)<br>향후 1개 선정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소통하는<br>마 을 | 국·공유지<br>환경개선 및<br>식재이용 | 유휴지로 관리되는              | 1개소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도로포장 개선                 | 도로포장(폭원 4m             | 구역 내<br>(L = 654.3m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쾌적한         | 주차·담장                   | 그린파킹 설치                | 13개소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마 을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장허물기 설치               | 7개소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가로환경                    | 보행환경중심도로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1개구간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/ 도완경<br>               | 가로환경개선(불법광고물부착방지 시트설치) |                      | 37개소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신규 설치                | 7개소                       |
| ما جا جا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CCTV                   | 기존 CCTV 교체           | 방범용 : 4개소<br>쓰레기단속용 : 2개소 |
| 안전한<br>미 0  | 시설물 설치                  | 보안등                    | 신규 설치                | 4개소                       |
| 마 을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인증                    | 기존 보안등 교체            | 21개소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사로 설치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1개소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사(계단) 안전바             | 설치                   | 2개소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은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또한 부지 확정 후 현황에 따라 개량 방법이 조정 적용될 수 있음.

# 영등포구 도림동(장미마을)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종합도(안)





# 도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
의 안 번 호

제출연월일 : 2015. 11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## 1. 제안이유

도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(안) 수립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

#### 2. 추진경위

- 2013. 08. 12. : 주거환경관리사업 신청 (구→서울시)
- 2014. 08. 26. : 제4차 주거환경관리사업 신규대상(후보지)선정위원회

선정결과 통보 (서울특별시고시 주거환경과-9387호)

- 2014. 07. 14. : 대상지 선정 및 용역비 지원 신청 (구→서울시)
- 2014. 11. 21. : 도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 용역 계약
- 2014. 12. 04. : 용역 착수보고 (영등포구)
- 2014. 12. 17. : 대상지 사업설명회
- 2014. 12. 09. ~ 2015. 09. 09. : 1~23차 주민 워크숍 개최
- 2015. 05. 21. : 용역 1차 중간보고 (영등포구)
- 2015. 07. 21. :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자문단 보고 (서울시)
- 2015. 09. 18. : 용역 2차 중간보고 (영등포구)
- 2015. 10. 05. : 주민설명회
- 2015. 10. 05. ~ 11. 03. : 도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(안)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

#### 3. 정비계획(안) 개요 - 붙임1 참조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52-76번지 일대
- 면 적: 70.519 m²
- 용도지역 : 2종일반주거지역, 2종일반주거지역(7층)
- 주요내용
  - 가로환경개선·방범안전강화사업 계획(도로포장, 보안등 및 CCTV 개선 등)
  - 주민공동체 활성화 계획
  -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관한 결정도 등

#### 4. 주민 의견 청취

#### ○ 공람공고

#### [도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(안)]

- 공고일 : 2015.10.05. (공고기간 : 2015.10.05. ~ 2015.11.03.)
- 의견접수 및 조치계획 : 붙임2 참조

#### ○ 관련부서 협의

#### [도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(안)]

- 협의기간 2015.10.05. ~ 2015.11.03.
- 의견접수 및 조치계획 : 붙임2 참조

#### 5. 검토의견

○ 도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(안)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임.

붙임문서: 1. 도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(안) 1부.

2. 주민의견 청취·관련부서 협의 및 조치계획 1부. 끝.

# 도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인

## □ 정비사업 개요

## ○ 정비구역 지정조서

| 구분     | 정비사업 명칭                | 위 치                     |    | 비고        |        |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|
| 丁亚     | পিশাসম তথ              | T ()                    | 기정 | 변경        | 변경후    | 비포 |
| <br>신설 | 도림동 (장미마을)<br>주거환경관리사업 | 영등포구 도림동<br>152-76번지 일대 | _  | 증) 70,519 | 70,519 | -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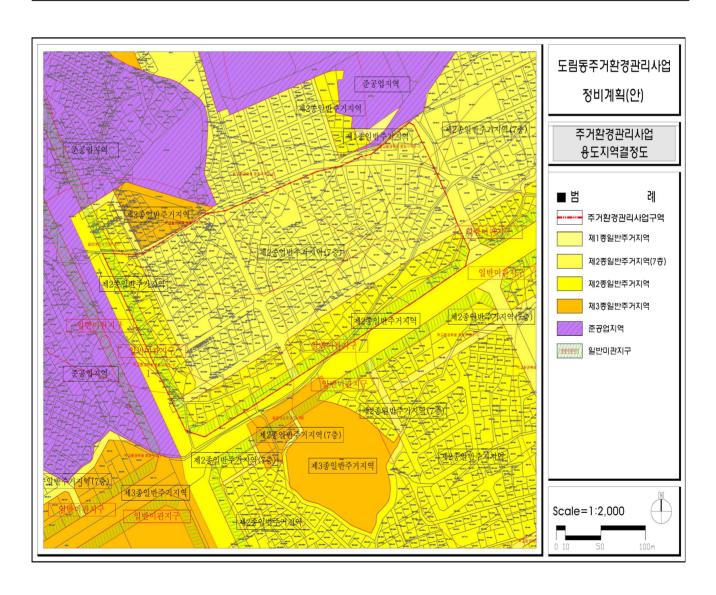
### ○ 토지이용 계획

| 구분           | 명 칭    |          | 면 적(m²) | 구성비(%)   | บโ∽     |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|
| 一七           | 명 칭    | 기정       | 변경      | 변경후      | 十78円(%) | 비고  |
|              | 합 계    | 70,519.0 | -       | 70,519.0 | 100.0   | _   |
| 주택           | 소계     | 57,143.3 | -       | 57,143.3 | 81.0    | -   |
| 용지           | 주택용지   | 57,143.3 | -       | 57,143.3 | 81.0    | _   |
| 정비           | 소계     | 8,574.7  | -       | 8,574.7  | 12.2    | _   |
| 기반<br>시설<br> | 도시계획도로 | 8,574.7  | -       | 8,574.7  | 12.2    | -   |
| 기반<br>시설     | 공공공지   | 188.0    | _       | 188.0    | 0.3     | 2개소 |
| 기타           | 현황도로   | 4,613.0  |         | 4,613.0  | 6.5     |     |



### ○ 용도지역·지구 결정조서 (변경없음)

| 구분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면적(11%) | 구성비(%)   | 비고         |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기정       | 변경      | 변경 후     | T/8 PI(70) | 미끄 |
|            | 계                   | 70,519.0 | -       | 70,519.0 | 100.0      |    |
| 일반<br>주거지역 | 제2종일반주거지역<br>(7층이하) | 49,905.2 | -       | 49,905.2 | 70.8       |    |
|            |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      | 20,613.8 | -       | 20,613.8 | 29.2       |    |



## ○ 공동이용시설 조성계획

### (1) 공동이용시설 후보지

| 구 분             | 1순위        | 2순위        | 3순위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사 진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
| 위치              | 도림동 140-15 | 도림동 138-33 | 도림동 138-41 |
| 대지면적(m²)        | 337        | 178        | 213        |
| <br>건축면적(m²)    | 90.25      | 73.77      | 80.0       |
| <br>연면적(m²)     | 181.49     | 221.31     | 240.24     |
| 지 목             | 대 지        | 대 지        | 대 지        |
| <del></del> 층 수 | 지상2층/지하1층  | 지상2층/지하1층  | 지상3층/ -    |
| 용 도             | 단독주택       | 주택         | 근린생활시설, 주택 |
| 준공년도            | 1977       | 1984       | 1995       |

## (2) 공동이용시설 후보지 위치도



### (3) 공동이용시설 운영프로그램

| 구분     | 세 부<br>프로그램     | 시간          | 운영내용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
| 옥상텃밭   | 옥상텃밭            | 항시          | 옥상 텃밭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도록 도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마을안전센터 | 마을안전센터          | 항시          | 마을 방범 안전센터   |
| 주민공예실  | 공예교육<br>수공예품 제작 | 항시          | 창의적 활동 공간  |
|        | 반찬나눔            | 요리<br>수업 후  | 요리수업 후 잉여반찬을 1인 세대를 위해 나눔 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나눔부엌   | 무료급식            | 월 1~2회      | 60세 이상 1인 독거세대를 위해 무료급식을 월 1~2회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다문화<br>음식체험     | 분기별<br>2회이상 | 다문화 가정의 엄마가 본국의 음식을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정도 나누고 서로<br>더불어 살도록 진행 |
| 운영사무실  | 운영사무실           | 항시          | 전반적인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 |
| 지하강당   | 다목적실            | 신청접수        | 어린이 놀이공간, 성인 모임장소(주민회의)<br>기타 물리적 공간 제공             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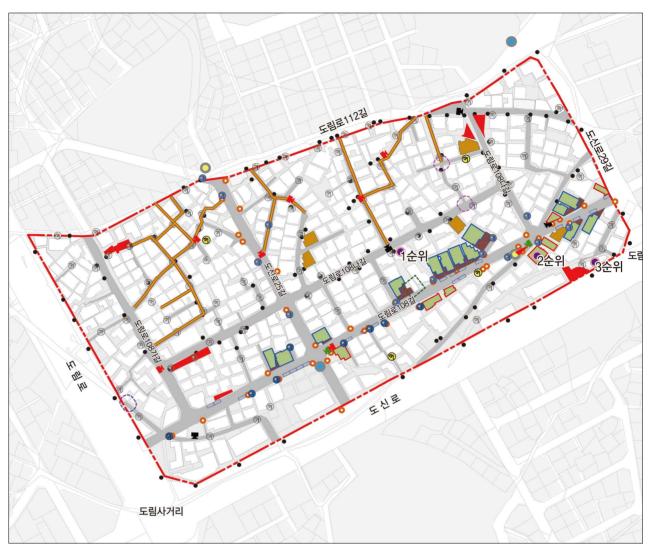
※ 참고: 주민공동시설 운영 프로그램은 주민공동체 운영회가 조직되기 전 계획이므 구체적 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.

### ○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

| 구분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위치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 巨コレ       | 공동이용시설 조성                | 마을 공동체 거점 :            | 후보지(3개소)<br>향후 1개 선정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소통하는<br>마 을 | 국· 공유지<br>환경개선 및<br>식재이용 | 유휴지로 관리되는 국·공유지 활용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1개소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도로포장 개선                  | 도로포장(폭원 4mc            | 구역 내<br>(L = 654.3m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쾌적한         | 주차·담장                    | 그린파킹 설치                | 13개소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마 을         | TAL 9.3                  | 담장허물기 설치               | 7개소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가로환경                     | 보행환경중심도로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1개구간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기도완경<br>                 | 가로환경개선(불법광고물부착방지 시트설치) |                      | 37개소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신규 설치                | 7개소                       |
| ما سا حا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CCTV                   | 기존 CCTV 교체           | 방범용 : 4개소<br>쓰레기단속용 : 2개소 |
| 안전한         | 시설물 설치                   | 보안등                    | 신규 설치                | 4개소                       |
| 마 을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인 등                   | 기존 보안등 교체            | 21개소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사로 설치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1개소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사(계단) 안전바             | 설치                   | 2개소                       |

<sup>※</sup>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은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또한 부지 확정 후 현황에 따라 개량 방법이 조정 적용될 수 있음.

### 영등포구 도림동(장미마을)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종합도(안)





1

#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협의 조치계획

### 주민설명회 관련 주민 의견

○ 주민설명회 개최일 : 2015. 10. 05

| 구 분 | 의 견 사 항  | 조치계획  | 비고  |
|-----|--|---|-----|
| 조민순 | • 사업대상지 북측 도림동 144-27<br>"도리미" 소공원 및 주변도로에<br>클린하우스 설치 | • "도리미" 소공원 클린하우스 설치는 관련부<br>서인 푸른도시과 협의 결과 공원 내 설치는<br>어려우며, 공원 주변 도로에 설치 관련 도<br>림동 주민센터 및 교통행정과 협의 결과 설<br>치 위치 주변 주민 반대 및 차량 소통에 영<br>향을 주는 바 반영 불가 | 미반영 |
|     | •도림로 112길 및 도림로 112가길2<br>CCTV 설치                      | •도림로 112가길에는 설치 계획이 있음  | 반영  |

### 2 공람공고 관련 주민 의견

○ 공람공고 기간 : 2015. 10. 05 ~ 11. 03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| 의 견 사 항  | 조치계획  | 비고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|
| 고영희<br>(도림로112<br>길 28) | <ul> <li>도림로 112길에 대하여 영유아 및 초등학생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양방통행을 일방통행 변경 또는 S자형 도로로의 개선을 요구</li> <li>거점공간 위치을 도림로 112길 일대로 변경 및 공동육아, 마더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당사자의 운영기획안으로 인정 요청</li> </ul> | 15)구간은 사업 대상지 외부에 위치하는 도로이므로 금번 정비계획안에 검토대상이 아님.<br>의견을 관련부서(교통행정과 등)로 전달하여<br>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함   | 미반영 |
| 김용현<br>주민협의체<br>위원장     | <ul> <li>주민공동이용시설 후보지를 기존 5<br/>개소에서 3개소로 변경</li> <li>운영프로그램을 기존 4개에서 3개로<br/>변경</li> </ul>  | ○ 공동이용시설 후보지 변경(5개 후보지→3개<br>후보지)및 운영프로그램 변경(4개→3개)에 관<br>련하여 서울시 공동이용시설 규모의 가이드<br>라인(2층건물, 리모델링)에 준하여 후보지를<br>변경하였고 또한 운영프로그램은 주민협의체<br>역량에 맞게 실질적이고 가능한 프로그램으<br>로 조정한 사항에 대해 주민협의체 의견이<br>타당하다 사료되어 공람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| 반영  |

# 3 공람공고 관련 영등포구 및 서울시 관련부서 제출의견

○ 협의기간 2015. 10. 05. ~ 11. 03.

| 구분          | 검토의견  | 조치계획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            |   | •확정되지 않은 공동이용시설 매입 비용 및    | 반영   |
| 202         | 용이나 공공분야 사업비용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공분야 사업비용은 삭제하겠음 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• 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시 공동체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공동이용시설과 관련해 부지 위치 및 운영   | 반영   |
|             | 운영회의 역량을 사전에 평가하여 수준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회의 역량과 경제적 자립구조 등을 재검토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맞는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경제적 자립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하여 운용계획을 수립하겠음             |      |
| 서울시         | 조 등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주거환경        | 후 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추진할 것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개선과         | •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역량 및 운영의 실현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   | 반영   |
|             | 성을 고려하여 용도별 적정 규모의 공동이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도별 규모 산정, 집기 및 운영비 확보방    |      |
|             | 용시설을 조성하고,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안을 수립토록 하겠음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의 집기와 운영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검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토할 것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  | ● 현재 계획된 보안등, CCTV, 쓰레기정거장 | 반영   |
| 서울시         | 설치되는 보안등, CCTV, 쓰레기 공동집하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도시계획과       | 장 등의 위치를 주민협정 사항에 포함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사유지를 활용하는 방안 강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되는 사항으로 실제 설치, 시공되는 시설에    |      |
|             |   | 한해 주민협정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겠음 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• 대상지는 경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반영   |
|             |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관심의 대상으로, 경관설계지침 및 체크리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210.21      | 스트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이를 토대로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서울시         | 경관심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람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에 의한 개발방식이 아니며, 지역 특성과     |      |
| 노시판리과       | • 위원회 경관시뮬레이션 작성원칙 및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('14.5.13)에 따라 대상지 주변 주요 조망점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을 구체적으로 선정, 명시하고 조망점에서<br>의 현황사진을 활용하여 눈높이에서 실질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의 연황사진들 활용하여 군묘이에서 결절<br>  적인 경관시뮬레이션 검토 바람     | 완안됨<br>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  | ●도림로108길은 일방통행 및 기존차로폭은    | 반영   |
|             | 림로108일)은 일방통행 구간으로 기존 차로폭 유지                    | 그대로 유지하여 계획하였음             | [ 변경 |
|             |   | •도림로108길은 구역 내에서 차량 및 보행통  | 반영   |
|             | 인한 단절로 보도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교통행정과       |   | 1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3 8 8 8 9 1 | 발생되므로 개선이 필요함(보차도를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한 상태에서는 보행자는 원칙적으로 보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를 이용하여야하며 차도에서 사고 발생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'' =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보행자 과실이 발생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  | •국·공유지 확경개선 부문에서 도림동       | 반영   |
| 재무과         | 동 152-113 토지소유자와 2015.5.8 매매계                   | 152-148 토지는 제외하고 계획하겠음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약 체결  | , =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–   | • 주차장 확보 및 담장허물기가 가능한 그린   | 반영   |
| 주차문화과       | 에 있는바, 그린파킹 대상가구 선정시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| ' ' ' '   '   -   -   -    |      |
|             | 차면 조성이 가능한 가구 선정(담장허물기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담장허물기(7개소)만으로도 골목의 시인성과  | 미반영  |
|             | 만 시행하는 가구 선정 지양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방감을 증진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본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  | 사업에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  | 계획하였음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  | •기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등 주차구획    | 반영   |
|             | 치한 주차구획을 유지하는 계획 수립요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은 기존대로 유지하여 계획하였음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
| 구분    | 검토의견   | 조치계획  | 비고  |
|-------|--|---|-----|
|       |  | 동 ●도림동 154-4외 1, 136-47 마을마당은 현                     | 반영  |
|       | 154-4외 1), 안심터 마을마당(도림동136-47                |   |     |
|       | 은 지역주민의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유용한                      | 5-  |     |
| 푸른도시과 | 게 활용되고 있으므로 현행 존치<br>●수목이 생육중인 지역은 지역 녹지량 확. | 크 • 쉽게 스모 새우주이 기여의 비주되게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반영  |
|       |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보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ય જ |
|       |  | -) ●기타 추진 중 저촉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반영  |
|       | 은 별도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후 협의토록 하겠음   |     |
|       | ●도로부분  | ●도로 재포장 계획(안)의 일부 사유지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반영  |
|       |  | 사 대해서는 토지사용승낙 등 협의 후 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| 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토지의 그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|
|       | 시구와 별도 업의(도시사용증탁) 우 중/<br>  시행하기 바람          | 사 ●추후 워크숍,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<br>의견 수렴 후 추가 도로포장 계획을 수립 |     |
|       | ^^%이기 미남<br> - 도로 정비 계획 외의 이면도로에 대해서]        |   |     |
|       | 추가로 도로포장 개선 바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|
|       | •보안등은 보안사각지대, 우범지대 방지를                       | 목 • 보안등은 상시 LED등으로 계획하겠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반영  |
|       | 적으로 설치, 따라서 센서형 LED사용은 3                     | 7   |     |
|       | 목적에 맞지 않음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|
|       |  | 설 • 담장허물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후 주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반영  |
|       | 치여부 검토 바람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견 수렴 후 추가 보안등 설치계획을 수립<br>하겠음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| ● 보아들 시설 및 교체에 따르 위치 및 제·                    | 이었는<br>품 ●센서형 보안등은 LED보안등으로 변경토                     | 반영  |
|       | 성능 등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록 하겠으며, 제품성능에 대해서도 반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  |
|       | - KS 및 고효율 인증을 획득한 LED보안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|
|       | (50W) 제품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|
|       | - 연색성 75Ra 이상, 무게 8kg 이하, 균제                 | 三   |     |
|       | 0.2 이상(권장사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|
| 도로과   | - 온도에 따른 광변화율 ±10% 이내<br>- 색온도 및 광효율(권장사항)   |   |     |
| 32,12 | 생연도범이(생 권자기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|
|       | 연번 색온도(K) 역근고급기(I) 단정기단 비고 (lm/W)            | 4   |     |
|       | 1 5,700 6,020 ~ 5,310 90 이상                  |   |     |
|       | 2 5,000 5,311 ~ 4,545 85 이상                  |   |     |
|       | 3 4,500 4,746 ~ 4,260 85 이상                  |   |     |
|       | - LED 전원공급 장치(권장사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|
|       | 구분 권장기준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|
|       | 역률 0.9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    |
|       | 이상전압 2차측 전압(DC전압 40V미만) 평균값 1.5V 이하          |   |     |
|       | (리클 and   O키스 zlok/DCzłok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|
|       |  |   |     |
|       | 콘덴스 온도 2차측(DC출력)전해콘덴서는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|
|       | 특성 105℃이상을 보증하는 제품 전원공급장치 퍼크 20 E 00℃ 시네     |   |     |
|       | 전년등 1경시<br>표면온도 평균온도 60℃ 이하                  |   |     |
|       | - 보안등주, 암대 및 기타 세부 사항은 도                     | 로   |     |
|       | 조명팀 협의 하에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|

| 구분                 | 검토의견  | 조치계획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|
| 홍보전산과              | • 방범CCTV 설치관련 주민동의서 징구 후 최<br>종 설치장소 선정   |   | 반영 |
|                    | • CCTV 설치관련 실시설계 시 통합관제센터<br>시스템과 호환성 및 연계 등을 고려하여 실<br>시설계 요청  |   | 반영 |
|                    | • 사업대상지 내 기존 CCTV 3개소 성능개선<br>요청  | • 사업대상지 내 기존 방범용 1개소, 쓰레<br>기 단속용 2개소 교체하도록 계획하였음   | 반영 |
|                    | • 그린파킹(담장허물기) 사업관련 CCTV설치<br>검토 등   | ● 그린파킹, 담장허물기 사업과 연계하여<br>추후 주민의견 수렴 후 추가 CCTV 설치<br>계획을 수립하겠음  | 반영 |
| 안전치수과              | • 주거환경관리사업 실시설계단계에서 사업대<br>상지 내 노후하수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<br>요청  |   | 반영 |
| 서울시<br>남부교육<br>지원청 | ●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세부적 교육환경보호 대책 1) 소음·진동 저감 대책 가)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이동식 가설방 음판넬 설치 나) 고소음(진동) 유발공사 실시간 조절 및 작업 시간 제한 ※ 고소음(진동) 유발 작업은 가급적 방학 기간 중에 실시하고, 부득이한 경유 수 업 종료 후 실시하는 방안 마련 다) 공사차량의 저속운행 및 경적사용 금 리 라) 공사 시 상시 모니터링, 작업시간대 및소음 발생기간의 조정 마) 저소음, 저진동 장비 및 공법 사용바) 건설장비의 효율적 투입사) 작업인부 소음・진동 저감 교육 실시 2) 비산먼지 저감 대책가)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나) 살수차 운행으로 주기적 살수다) 차량의 운행속도 제한라) 비산방진망 설치마) 유지목표농도의 설정 및 모니터링 ※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공사는 방학 중실시하여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3) 석면페기물 처리대책 건축물 철거 시 및 페기물 처리시「석면페기물관리대책, 2007.2.5. 환경부」,「건축물석면관리 가이드라인, 2009.4.16, 환경부」준수 4) 기타사업 시행 시 정화구역 위치 학교와 사업자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공사 진행,학사 일정,공사 미흡・건의 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본 사업 추진 | 거에 의한 개발방식이 아니며, 지역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주민참여형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 • 추후 건축물 신축 행위, 가로환경개선 사업 등 공사 시 소음·진동, 비산먼지 저감대책및 석면폐기물 처리대책을 수립하겠음 | 반영 |